

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

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86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즉시	
이륜 자동차	등록번호		차대번호		소유자성명(상호)		
	최초신고일		차명(제작사)		제작일자		
	모델연도		이전주행거리		현주행거리		
현재 검사유효기간				다음 검사유효기간			
종합판정				재검사기간			
관능 및 기능검사	판정		검사항목		측정치	허용기준	판정
	부적합내역		배출 가스	일산화탄소(CO)	%	%	
				탄화수소(HC)	ppm	ppm	
			소음	배기소음	dB(A)	dB(A)	
				경적소음	dB(C)	dB(C)	
차 체	길이(mm) :	차량중량(kg) :	원	형식 :		특기사항	
	너비(mm) :	총 중량(kg) :	동	배기량(cc) :			
	높이(mm) :	승차정원(명) :	기	정격출력/회전수 :			
검사원	관능 및 기능		배출가스		소음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
(지정정비사업자)



유의사항

- 검사결과는 적합이므로, 고객님의 다음 검사기간은 검사만료일로부터 전·후 31일입니다.(0000-00-00~0000-00-00) : (적합인 경우)
- 검사결과는 부적합이므로, 정비를 완료한 후 재검사 기간(0000-00-00)까지 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: (부적합인 경우)